



##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이 세 진\*·김 준 헌\*\*

### 요약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이며, 자본이득(資本利得)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로 과세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非課稅)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 중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 형식으로 부과되며, 직계가족(直系家族) 간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OECD 주요국들의 상속 공제와 관련하여, 인적 공제 부문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유산취득세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으므로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I. 들어가며

상속세(相續稅)는 자연인(自然人)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최근에는 대기업 경영권 승계·상속세 논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상속세제의 개편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재정적 여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현재 상속 관련 세제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나라 상속세제 개편 논의에 대하여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 1. 개요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속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나라 등 24개국<sup>1)</sup>이며, 자본이득(資本利得)<sup>2)</sup>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 4개국,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로 과세하는 국가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3개국, 비과세(非課稅)인 국가는 오스트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7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OECD 회원국의 상속세 과세 현황

구분	국가
상속·증여세 부과(20)(유산취득세 방식)	벨기에, 칠레,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상속·증여세 부과(4)(유산세 방식)	덴마크, 대한민국, 영국, 미국
자본이득세 부과(4)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추가소득세(3)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비과세(7)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재구성

다만,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인지세(Stamp Duty)’<sup>3)</sup> 형식으로 부과되며, 직계가족(直系家族) 간에는 면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 1)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회원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우리나라 등 4개국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2)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이다. 자본자산이란 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기업의 매각, 파트너지분, 특허권 등이 포함되며 이들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기타자산의 양도에 의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 3)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자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稅)의 하나이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지세는 1624년 처음으로 네덜란드에서 사용, 그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級定額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자수입으로 계산한다.

## 2. OECD 주요국 및 각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 현황

### 가. 미국

개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연방정부 차원에서 유산세(Estate Tax) 또는 세대생략세(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가 부과된다. 유산세는 1916년 개인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납세의무자는 사망시점에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이며,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 또는 상속을 받은 자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유산세를 신고·납부한다.

지난 2001년 부시 행정부는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The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을 제정하여 2010년 12월 말에 유산세와 세대생략세가 잠정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하였으나,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2010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TRUIRJA)” 제정을 통하여 당초 2010년 12월 31일자로 종료 예정이었던 「경제성장과 세금감면법」 상 유산세 등의 관련 내용을 변경하여 유산세는 일부 내용이 변경된 채로 유지되었다.

[표 2] 미국 유산세 과세체계

구분	산식
과세대상 유산 (taxable estate)	총 유산(gross estate) <sup>4)</sup>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 = 조정된 총 유산(adjusted gross estate) 조정된 총 유산-(배우자 공제, 기부금 공제 등)=과세대상 유산
유산세 과세표준 (estate tax base)	과세대상 유산+1976년 이후 조정된 과세대상 증여
유산세 납부세액	유산세 과세표준×누진세율(18~40%)=잠정 유산세 잠정유산세-기납부 증여세액공제-통합세액공제-외국납부 유산세 공제-단기재상속 세액공제=유산세 납부세액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012. 12.

### 나. 일본

일본의 상속세는 190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1953년 세무행정 상의 난점으로 인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따로 취급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대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자 1988년과 1992년, 1994년, 2001년, 2003년에 걸친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며, 2013년 3월말 상속세율의 최고 세율 인상, 상속세 기초공제 인하, 미성년자 공제 및 장애인 공제의 인상 등과 관련된 상속세법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 상속세액의 계산은 과세가격의 합계액의 계산, 과세유산액의 계산, 상속세 총액의 계산, 개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개인의 납부세액의 계산이라는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4) 총유산에 포함되는 자산은 단지 고인이 사망 당시 소유권을 보유한 국내외의 모든 자산 이외에도 비록 고인이 생존 당시 소유권을 양도하였어도 만약 고인이 양도한 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을 받을 권리를 계속 유지하거나 지배·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면 이러한 증여 자산도 총유산에 포함된다.

[표 3] 일본 상속세 과세체계

구분	산식
제1단계 과세가격의 합계액 계산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유산총액 <sup>5)</sup> 비과세재산, 피상속인의 채무, 장례비용 납세유예되는 비상장주식, 농지 등 + 상속개시일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선택한 증여재산가액 = 과세가격의 합계액
제2단계 과세유산액의 계산	과세가격의 합계액 - 기초공제액 = 과세유산액
제3단계 상속세 총액의 계산	과세유산액을 각 법정상속인이 각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하였다고 가정한 상속인별 취득액× 상속세 누진세율(10~50%) = 상속세 총액(개인별 세액의 합계)
제4단계 상속인별 산출세액의 계산	상속세 총액×(실제 상속인별 취득 과세가격/과세가격의 합계액) = 상속인별 산출세액
제5단계 상속인별 납부세액의 계산	상속인별 산출세액 배우자 세액공제, 미성년자 세액공제, 장애인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 기납부 증여세액 세액공제 = 상속인별 납부세액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012. 12.

### 다. 영국

영국에서의 상속세는 상속자가 사망한 시점에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생전의 신탁이나 증여에 대하여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기도 하며 1986년에 자산이전세에서 상속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영국은 상속세 만 존재하고 일반적인 증여는 자본이득의 차원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 영국 상속세 과세체계

구분	산식
조정된 총유산(total estate in UK)	총 유산(gross estate) <sup>6)</sup> 부채, 장례비용, 유산관리비용 등 = 조정된 총 유산(adjusted gross estate)
총과세대상 유산(total chargeable estate)	조정된 총유산-배우자 공제 등의 공제액 + 국외재산, 신탁 등 고려해야할 추가 재산
과세표준(value chargeable to tax)	총과세대상 유산 + 사망 7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 상속세 기본공제
상속산출세액(inheritance tax)	과세표준×세율(40%)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2012. 12.

### 라. OECD 전체 회원국의 상속 관련 세제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의 개략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콜롬비아와 코스타리카를 제외<sup>7)</sup>한 OECD 회원 36개국의 상속 관련 세제 법령 및 최초 도입년, 부과주체 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콜롬비아는 상속세가 없으며, 증여세의 경우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sup>8)</sup> 코스타리카는 상속세와 증여세 항목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재산 및 재산권의 무상이전에 대한 추가소득세 제도가 적용된다.<sup>9)</sup>

5)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재산, 그리고 취득하였다고 간주되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6)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고인의 재산으로서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며, 주택의 부속물,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모든 증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7) 콜롬비아는 2018년, 코스타리카는 2021년 가입

8) Deloitte,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16.

**[표 5] OECD 회원국의 상속세 연혁 등**

국가	법률명 (national language)	법률명 (English)	최초 도입년	현대적 과세	폐지년	부과주체
벨기에	Droit de succession	Inheritance Duty	1795	1936	-	Regional / State
칠레	Impuesto a las Herencias y Donaciones	Inheritance and Gift Taxes	1915	1915	-	National
덴마크	Boafgiftsloven	Inheritance Estate and Gift Taxes	1792	1995	-	National
핀란드	Perintövero	Inheritance Tax	1940	1940	-	National
프랑스	Droits de mutations titre gratuit	Tax on Free Transfers	1791	1791	-	National
독일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1906	1974	-	National
그리스	Φόρος Κληρονομιάς	Inheritance Tax	1836	2001	-	National
헝가리	öröklési illeték	Inheritance Duty	1918	1918	-	National
아이슬란드	Erfðafjárskattur	Inheritance Tax	1792	2004	-	National
아일랜드	Capital Acquisitions Tax	Capital Acquisitions Tax	1894	1976	-	National
이탈리아	Imposta sulle successioni e donazioni	Inheritance and Gift Tax	1862	2006	-	National
일본	相続税	Inheritance Tax	1950	1950	-	National
대한민국	상속세및증여세법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1950	1950	-	National
리투아니아	Paveldimo turto mokesčio įstatymas	Law on Inheritance Tax	1990	2003	-	National / Local
룩셈부르크	Droits de succession	Inheritance Tax	1817	1817	-	National
네덜란드	Erfbelasting en schenkbelasting	Inheritance and Gift Tax	1859	1956	-	National
폴란드	Podatek od spadków i darowizn	Tax on Inheritance and Donation	1920	1983	-	National
포르투갈	Imposto do selo sobre transmissões gratuitas	Stamp Duty on Inheritance and Gifts	1959	2004	-	National
슬로베니아	Davek na dediščine in darila	Inheritance and Gift Tax	1988	2006	-	National
스페인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Inheritance and Gift Tax	1798	1988	-	National / 4 Regional
스위스	Erbschafts- und Schenkungssteuer	Inheritance and Gift tax	1870	1986	-	Regional / 5 State
터키	Veraset ve İntikal Vergisi	Inheritance and Gift Tax	1959	1959	-	National
영국	Inheritance Tax	Inheritance Tax	1894	1986	-	National
미국	Estate and Gift Tax	Estate and Gift Tax	1916	1916	-	National
호주	Estate Tax	Estate Tax	1851	1914	1979	National / State
오스트리아	Erbschaftssteuer	Inheritance Tax	1759	1955	2008	National
캐나다	Estate Tax	Estate Tax	1941	1958	1972	National
체코	Zákon o dani dědické, darovací a dani z převodu nemovitostí	Act on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Real Estate Transfer Tax	1993	1993	2014	National
에스토니아	-	-	-	-	-	-
이스라엘	חוק מס ערבוך	Inheritance Tax Law	1949	1949	1980	National
라트비아	-	-	-	-	-	-
멕시코	Impuesto sobre Herencias y Legados	Inheritance and Bequest Tax	1926	1926	1961	National / State
뉴질랜드	Estate duty	Estate Duty	1866	1866	1992	National

자료: OECD, 「Inheritance Taxation in OECD Countries」, 2021.

 9) <https://arturoblancolaw.com/faqs/>

### 3. OECD 회원국들의 직계(直系) 상속에 대한 최고 세율

OECD 회원국들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의 평균은 약 15% 정도인 바,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sup>10)</sup>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각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각종 공제제도<sup>11)</sup>나 기존 소득세와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표 6] OECD 회원국의 직계 상속에 대한 최고세율

세율	국가	세율	국가
55%	일본	20%	그리스, 네덜란드
50%	대한민국	19%	핀란드
45%	프랑스	15%	덴마크
40%	영국, 미국	14%	슬로베니아
34%	스페인	10%	아이슬란드, 터키
33%	아일랜드	7%	폴란드, 스위스(칸톤 레벨)
30%	벨기에, 독일	4%	이탈리아
25%	칠레	0%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헝가리, 체코,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OECD 평균 세율	15%		

주 1: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는 추가소득세(Extra Income Tax)를 부과

주 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은 자본이득세를 부과

주 3: 오스트리아, 체코, 이스라엘,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7개국은 상속 관련 비과세 국가

주 4: 포르투갈은 '인지세' 형태로 부과, 슬로베니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해 비과세

주 5: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대하여 비과세

자료: Alan Cole, 「Estate and Inheritance Taxes around the World」, Tax Foundation, 2015. 재구성

### 4. OECD 주요 국가들의 인적 공제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상속공제는 배우자 상속공제·그 밖의 인적공제·일괄공제와 같이 상속인들의 인적구성에 따른 인적공제 성격의 공제와 상속재산의 구성에 따른 물적공제로 분류된다. OECD 주요국의 인적 공제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으며, 인적 공제에 있어 특징적인 사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있어 한도가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 이하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sup>12)</sup>

10) 우리나라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 구간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구간의 초과단계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이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시 최고세율 구간을 5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1)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경제정책적 목적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12)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액(30억원) 범위에서 공제하며, 이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 준다.

**[표 7] 주요국의 인적 공제(2021년 기준)**

국가	인적 공제 내용
프랑스	배우자공제: 한도 없음 자녀공제: 10만 유로 기타친족공제: 1만 5,932 유로 기타공제: 1,594 유로
독일	배우자공제: 50만 유로 자녀공제: 연령에 따라 40만 ~ 45만 2,000유로 손자/증손자(자녀가 살아있을 경우): 20만 유로 부모공제: 10만 유로 기타친족공제: 2만 유로 기타공제: 2만 유로
이탈리아	배우자공제: 1백만 유로 직계가족공제: 1백만 유로 형제자매공제: 10만 유로 장애가족공제: 1백 5십만 유로 기타친족공제: 없음
일본	배우자공제: 법정 상속분 이하로 실제 취득한 경우에는 전액,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 6천만 엔 자녀공제: 3,600만 엔 미성년자공제: 20세에 달할 때 까지 연 10만 엔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 장애가족공제: 8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각 1년에 대해 10만 엔(특별장애인인 20만 엔) 공제
스페인	배우자공제: 1만 5,956 유로 직계공제: 1만 5,956 유로(단,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연 3,990 유로 가산, 최대 4만 7,858 유로) 친족공제: 7,993 유로 장애가족공제: 4만 7,858 ~ 15만 253 유로
영국	배우자 공제: 한도 없음 자녀공제: 50만 파운드
미국	배우자 공제: 한도 없음 통합세액공제: 1,170만 달러

자료 : DICE Report(2018), OECD(2021), EY(2021)을 참고하여 작성함

### III. 캐나다 및 스웨덴의 상속세제 개편 사례와 시사점

#### 1. 캐나다

캐나다 연방정부 차원의 상속세는 1941년에 도입되었다. 캐나다 상속세 폐지 논의의 시발점은 1960년 초 ‘카터 위원회’의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카터 위원회는 소득, 판매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재검토하고 1967년에 카터 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위원회 제안의 주요 기조는 세금이 개인과 가정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부과되어야 하며 과세(課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세금이 모든 개인과 가정 사이에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 차별을 반대하고 ‘종합과세 기반(Comprehensive Tax Base)’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였다.<sup>13)</sup>

위원회는 소득원천의 과세차별 반대 및 종합과세 기조에 맞추어 증여와 상속재산은 행위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폐지하는 한편,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資本利得稅)’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1972년 연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입비중,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이중 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캐나다 연방정부의 세수 수입 비중에서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1933년~1969년 사이에 1.7%를 넘지 않음)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고 캐나다 연방정부가 판단했던 것이며, 이에 연방정부는 상속증여세를 포기함으로써 자본이득세의 도입과 사망시 미실현 자본이득의 인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동의를 획득하였다고 평가된다. 덧붙여 당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세 이중과세와 과세의 복잡성이라는 문제 및 세수 대비 징수비용도 상속세 폐지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sup>14)</sup>

## 2. 스웨덴

스웨덴은 1884년에 상속세, 1915년에 증여세를 도입·운영하다가 이를 모두 2005년에 폐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하였다. 스웨덴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당시 스웨덴 전체 가족기업의 절반 가량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의 지속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고, 가족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수십만 명의 종업원들도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기업의 축소 또는 폐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sup>15)</sup>

이러한 결정이 정치적으로 가능했던 요인으로는 스웨덴 중산층은 이미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노후엔 연금으로 생활이 보장되기에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과거 스웨덴의 상속세 최대 구간이 65%로 세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니 평소 상당한 여윌돈을 비축하지 않은 이상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속 받은 재산을 바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저야 했던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중산층을 중심으로 상속세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sup>16)</sup>

## 3. 시사점

전통적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상속세에 대하여 과세근거가 취약하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유산(遺産)이 이미 소득과세 제도 하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나머지에 대하여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 상속세는 증여세와 함께 부의 집중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강화시키는 사회정책적 의의를 갖는 조세로 설명되어 왔다.

13)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

14) David G. Duff, "The Abolition of Wealth Transfer Tax : Lesson from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SSRN Electronic Journal, 2005.

15) 송원근·유진성·허원제·김영신,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3.

16) 하수정, 『스웨덴에 상속세가 없는 이유』, 경향신문, 2020. 11.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많은 학자들은 상속세를 비롯한 유산 세제의 강화가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 및 투자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증가·고용확대·자본축적 등을 통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장기적으로 세수증가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sup>17)</sup> 실제 그와 같은 주장에 기초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캐나다 등에서는 상속과세를 자본이득세(資本利得稅)<sup>18)</sup>로 대체하는 입법례도 나타났다.<sup>19)</sup>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등 4개국<sup>20)</sup>을 제외한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0개 국가가 취득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被相續人, 사망자)의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보다는 상속인 개개인에 대하여 유산의 귀속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sup>21)</sup>에서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되, 과표구간, 공제제도 등도 함께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 방식 또한 세 부담의 감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위의 분할신고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유산분할의 실태에 관한 공시가 불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sup>22)</sup>되기도 하므로 각국의 사회제도, 세무행정의 수준, 개인 소득세의 보완성, 국민의 납세의식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OECD <<https://www.oecd-ilibrary.org>>.

17)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2, p. 774 이하 참조

18)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

19) 이와 같은 상속세폐지론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는 결과의 평등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출발은 평등해야 한다는 공평의 이념에 터잡은 것으로서 소득세보다 강한 당위성을 가지고, 상속세란 먼 미래에 그것도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생길 세 부담이므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득세를 세제의 핵심으로 삼는 이상 상속증여세는 세제의 필수적 구성요소일 수 밖에 없다는 반대론기도 상존하고 있다고 한다.(이장희, 『세법강의』(2011), 박영사 등 참조)

20) 대한민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21)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보고서』, 2019. 2.

22) 이에 대하여 일본이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했던 1950년 당시와 비교하면 세무행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반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견도 있다(한국조세연구포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3. 12).



##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 외국 입법·정책 분석 발간목록

호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01호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 기후변화 감축분야를 중심으로	2021.5.27.	이혜경
02호	중국 「해경법」 제정의 내용과 시사점	2021.8.19.	정민정
03호	외국의 인터넷 법률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2021.9.3.	김광현, 김성호
04호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2021.9.7.	김준헌
05호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	2021.9.16.	허민숙
06호	외국의 데이터강간 약물 이용 성범죄(DFSA) 규제와 시사점	2021.9.17.	전윤정
07호	2020년 독일 「연방선거법」 주요 개정내용	2021.9.24.	김종갑
08호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2021.10.1.	이세진, 김준헌

